

서 울 특 별 시

우편번호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 전화 (02) 731-6371-6373 / 전송 (02) 731-6374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서번호 : 건행 58150 - 523

시행일자 : '94. 3.

경 유 : (제1안)

수 산 : 내부결재

차 즈 :

참 조 :

참 조 :

참 조 :

취급		시장
보존	년	
도로국장	— 전 결 —	
건설행정과장	<u> </u>	법무담당관
시설관리계장	<u> </u>	법제심사계장
기안자	이준달	가로정비계장 <u> </u>
		협조

제 목 :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 입법예고

No. 129

1. 도로법시행규칙(건설부령 제546호, 94. 2. 1)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이를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조례 개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 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별첨안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안 : 별첨

나. 입법예고기간 : '94. 3. 15 ~ 4. 3 (20일간)

첨부 :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서울특별시장

(제2안)

수신 : 광보관

참조 : 공보1담당관

제목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시보 게재 의뢰

1.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시보 게재를 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안 : 별첨

도로국장

927

乙

(제3안)

수 신 : 수신처참조

제 목 :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도로법시행규칙(건설부령 제546호, 94. 2. 1)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본조례 개정에 참고하고자
하니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 유관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94. 4. 3까지 건설행정과장
참조 제출하기 바라며 기일내 제출 사항이 없으면 별도 의견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할 것임

가. 의견조회사항 : 별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첨부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처 : 기획담당관, 서관(1-5), 서국(1-14), 서본부(1-4), 서구(1-22, 건설관리과장)



서울특별시공고 제1994- 호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4년 3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취지

도로법시행규칙(건설부령 제546호, '94. 2. 1)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례에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도로점용료를 전액면제 받을수 있는 법인 규정

- (1) 한국도로공사
- (2)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3) 한국고속철도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나. 점용료 감면율 규정

- (1) 점용목적 완전 상실— 전액 면제
- (2) 부분상실— 상실면적의 비율에 따라 면제
- (3) 농작물 피해가 50%이상— 전액 면제, 50% 미만일때 그 비율 감면

다. 도로점용허가 수수료 징수 — 점용료의 1천분의 1

라. 과태료 징수

(1) 징수대상

- (가) 도로점용허가 면적 초과 사용자
- (나) 도로상 적치물을 무단적치한 자
- (다) 도로점용공사 확인받지 아니한 자
- (라) 도로원상회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과태료 — 50만원이하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4. 4.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건설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731-6371-3, 6771-3 Fax 731-637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개정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중 '건설부령이 정하는'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으로 하고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 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다.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
- 라. 민법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제1항 제2호중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을'을 '이와 유사한 시설을'로 한다.

제2항 제3호중 '건설부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시장이 정하는 비율'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으로 하고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 나.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 다. 농작물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제8조 제1항중 '건설부령이 정하는'을 '점용료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수수료는 허가시에 징수하되 시수입은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로, 구수입은 자치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9조중 '점용료, 부당이득금, 수수료의'를 '점용료, 부당이득금, 수수료, 과태료의'로 한다.

제10조중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를 '점용료, 부당이득금, 수수료, 과태료'로 한다.

원본대
2018. 6. 6.
2018. 6. 6.

제11조 중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를 '점용료. 부당이득금. 수수료. 과태료'로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과태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3에 정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자
 2.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적치한자
 3. 법 제4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자
 4. 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도로의 원상회복검사를 받지 아니한자
- ②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표4에 정한 과태료 처분 통지서, 별표5의 고지서를 발부한다
③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별표6의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④ 시장이 과태료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게 한 자에게는 징수한 과태료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있다.

[별표1] ※ 비교2에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1/365년으로 한다'를 추가한다.

원본대조필
66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 표 3]

과태료 부과기준표 (제13조 관련)

과 태 료 부 과 대 상 법		과 태 료 금 액
. 도로점용허가후 초과사용 면적	. 도로점용공사후 확인받지 않은기간	
. 일시적치물 도로 무단점용 면적	. 도로원상회복 검사를 받지않은기간	
10m ² 이하	1월 이하	50,000원
10m ² 초과 20m ² 이하		150,000원
20m ² 초과 40m ² 이하	1월 초과 3월 이하	200,000원
40m ² 초과 60m ² 이하		250,000원
60m ² 초과 80m ² 이하	3월 초과 6월 이하	300,000원
80m ² 초과 100m ² 이하		400,000원
100m ² 초과	1년 초과	500,000원

※ 참고 : 과태료는 면적 또는 기간중 하나만 적용한다.

원본
대조필

46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과태료처분 통지서

1. 귀하는 다음과 같이 도로법 제40조,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로전용료 징수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 공금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한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 부 : 1. 과태료 납부통지서등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1부

원
본
대
조
필

W.D.

○ ○ 구 청 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시수입	과태료 납입 고지서	
구수입	및 납입 필 통지서	
제 호	19	년도 일 반 회계
(관) 세외수입	(항) 임시적 세외수입	
(세항) 잡수입	(목) 과태료	
납 부 주 소		
의무자 성 명		
위 반 장 소		
위 반 내 용		
과태료 금액	원정	
<p>위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납부장소 : 서울특별시 공금수납대행점</p> <p>19 년 월 일</p> <p>구 청 장 인</p>		

시수입	납 부 필 통 지 서	
구수입		
제 호	19	년도 일 반 회계
(관) 세외수입	(항) 임시적 세외수입	
(세항) 잡수입	(목) 과태료	
납 부 주 소		
의무자 성 명		
위 반 장 소		
위 반 내 용		
과태료 금액	원정	
<p>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p> <p>19 년 월 일</p> <p>서울특별시 공금수납대행점 인</p> <p>구 청 장 귀 하</p>		

영수증
19

영 수 증		
제 호	19	년도 일 반 회계
도로점용허가면적초과사용, 도로상무단 일시적지, 도로점용공사 미확인, 도로 원상회복검사 미필 과태료		
납 부 주 소		
의무자 성 명		
위 반 장 소		
위 반 내 용		
과태료 금액	원정	
<p>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p> <p>19 년 월</p> <p>서울특별시 공금수납대행점</p> <p>납부자 주소 :</p> <p>성 명 : 귀하</p>		

[별자 제6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동.로 가 번지 호			전화번호	
과태료 처분	허가번호			상 호	
대 상 지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 동.로 가 번지 호				
과 태 료	부과구청			납부통지서번호	
처 분 내 용	동지일			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 ○ 구 청 장 키 하					
구 비 서 류					

035

원본 대조필
160

35